

# 제39회 무사고운전자 선발 공고

아래와 같이 10년 이상 무사고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선발하여 무사고운전자증을 수여하고자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**신청기간** 2019. 1. 14(월) ~ 2. 17(일)「35일간」

**신청접수처** 경찰서 민원봉사실

**신청대상(선발기준)**

## 가. 신규신청

2018. 12. 31일 기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면서

- 10년 이상('18. 12. 31 기준, 역산) 교통사고(인적피해 교통사고 또는 음주·무면허·조치불이행 물적피해 교통사고)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
- 표시장 신청에 따른 기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(적성검사 미필 취소 제외)된 사실이 없는 자  
※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쿨택시는 해당됨

## 나. 제외대상

-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자 또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구급차·대여차(렌터카)·구난차·견인차,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(덤프트럭 등 대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해당), 기타 특수자동차의 운전자(특별용도로 제작된 차량으로 이동정비차량, 램핑카 등)
- 운수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나 직접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
- 기타 결격자

**제출서류**

가. 무사고운전자증 신청서 1부

나. 사업체별 취업 확인서 (운수회사, 조합 발급)  
또는 사업체별 경력증명서 (운수회사, 조합 발급)



**표시장 구분**

구분	표시장의 종류	비고
30년이상 무사고	교통안전장	표시장 종별에 따라 별도 수여
25년이상 무사고	교통삼색장	
20년이상 무사고	교통질서장	
15년이상 무사고	교통발전장	
10년이상 무사고	교통성실장	

**참고사항**

가. 무사고기간 산정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기간을 합산하되, 선발기준일(2018. 12. 31)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산정

나. 운전경력증명(취업확인서)는 취업하고 있는 소속회사(조합) 또는 과거 취업했던 소속회사(조합)의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에 한 함

다.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취업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(예시 : 일십팔년오월이십일로 표기)

라.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,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

※ 자세한 사항은 지방경찰청(교통안전계) 또는 경찰서(교통관리계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1월 14일

경찰청장 · 도로교통공단 이사장